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9.

발 의 자 : 이학영 · 임호선 · 안호영
강준현 · 김주영 · 박희승
전용기 · 백선희 · 염태영
박정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,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,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4제1항).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4제1항 본문 중 “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”를 “및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되,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의4(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<u>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.</u> 다만,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26조의4(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---- -----<u>및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되,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.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